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

의정정보

8

2014-8호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시의회, 의회개혁과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 등 4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등 3건

● 최근 개정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충청남도의회 60년사(연재⑧)

- 충청남도의회 60년사의 성과와 미래상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서울특별시의회 (5)
- 부산광역시 의회 (7)
- 인천광역시 의회 (9)
- 경기도 의회 (11)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15)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
-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24)

➔ 최근 개정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9)

➔ 충청남도의회 60년사

- 충청남도의회 의 성과와 미래상
- 문화·복지 분야 (36)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서울특별시의회(5)

과도한 의전 문제로 전남도의회 구설

부산광역시 의회(7)

부산시의회, 부산 공기업 대수술 나선다.

인천광역시 의회(9)

'인천시의회, 사진만 찍곤 '봉사활동' 거짓 자료배포

경기도 의회(12)

경기도의회, 공문서 등에 국어 바로쓰기 추진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의회개혁과제 발굴 시민제안 공모

서울시의회, 선진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과제 시민제안 공모

조상호 개혁특위 위원장 “투명하고 생산적인 선진의회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 밝혀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4)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선진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과제를 시민 제안을 통해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입법성과 등에 있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와 지지가 부족한 점을 반성, 보다 투명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개혁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안은 특위 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개혁 과제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시민의 눈높이 부응하는 청렴하고 전문적인 선진화된 의회 체계로 환골탈퇴할 계획이다.

의회 개혁과제 시민제안공모는 8월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반영된 의견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에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환영하며, 유선 또는 이메일(담당자: shesha01@seoul.go.kr) 등으로 아무런 양식이나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제안을 보내면 된다.

조상호 특위위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의회 개혁과제 제안을 의회운영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선진의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사 점

의회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도의회 의회개혁특별위 설치 등 검토 필요



2.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부산 공기업 大수술 나선다.

'감사 사각지대' 부산시 산하 공기업 대대적 점검 실시

부산시의회(의장 이해동)가 공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 부산시 산하 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25일 다음달 4일 '부산시 공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기업특위는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6개월간 부산시 산하 공사와 공단 5개를 비롯한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가 공기업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기업들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등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공기업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활동을 벌인 뒤 1년간의 일정으로 '부산시 공기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감사의 사각지대였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의회가 특위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이와 함께 6대 의회에서 활동한 '부산시 원자력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 고리 원전 문제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원전관련 기관 부산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시 사 점

공기업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 공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3.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사진만 찍은 '봉사활동' 거짓 자료배포

인천시의회가 보도한 몽골 출장 중 봉사활동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인에게 봉사활동 관련 사진의 가치는 돈 300달러와 같을까. 인천시의회가 몽골 출장 중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힌 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보육원(고아원)에 들러 성금을 전달하고 사진만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 현지 보육원 관계자는 "사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들"이라며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바양주르흐(Bayanzurkh)구의 'बाट담을안호아후호뎨토 보육원'. 현지 취재 결과 당시 시의회는 이날 오전 중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보육원에 약속한 상태였다.

이 보육원은 오전 10시에 오겠다던 시의원들을 믿고 봉사활동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시의회 관계자들은 해당 시설에 성금 300달러를 건내며 사진만 찍고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회 관계자들은 아이들 앞에서 담배를 피워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이후 시의회는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의 제목은 '인천시의회, 몽골에서 봉사활동 보람'이다. 이 자료에는 '현지 불우시설을 찾아가 봉사활동도 전개해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지에서 찍은 사진도 첨부했다.

현지 시설 관계자는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망쳤다"며 "봉사활동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사진만 찍었다. 몽골에 다시는 오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4박6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초청을 받아 출장길에 나섰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의 시의원이 참가했다.

이번 출장에 참가한 한 시의원은 "약속을 어긴 부분이나 보도자료를 낸 사실은 잘 몰랐다"며 "현지 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방문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시 사 점

관행적인 홍보위주의 봉사활동에서 탈피, 실직적인 봉사활동 문화 정착 필요



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공문서 등에 국어 바로쓰기 추진

경기도의회가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9대)가 도와 산하 공공기관 공문서 등에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제8대 도의회 당시 문형호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조례로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창석(새정치·성남2) 의원 등은 '올바른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에서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 언어, 무분별한 외래어와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기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 토박이말 실태 파악 및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 9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 사 점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의 보존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 도의회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조례 기 제정(2014년 02월)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15)
-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19)
- ❖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제정) 2014-08-14 조례 제 4333호

1. 제정이유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집중화를 통해 창작, 소통, 교류, 예술행정 등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문화예술센터로서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예술가의 집 위치 및 시설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예술가의 집 운영 및 운영위원회 역할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다. 예술가의 집 휴관일과 사용신청 및 제한을 정함(제7조~제9조).
- 라. 예술가의 집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제12조).
- 마.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 14조).

시 사 점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도 장기적으로 검토 할 과제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제정) 2014-08-14 조례 제 433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창작스튜디오
4. 체험실
5. 법인·단체 사무실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관리)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 집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일)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 · 포교

-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행사가 아닌 경우
-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7-11 조례 제4770호

1. 제정이유

경기도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 경제 육성 정책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5조)
- 다.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을 규정함 (제6조~제9조)
- 라.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사회적 경제지원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시 사 점

나눔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유경제 제도를 도입 검토 필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8-07 조례 제 4776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 및 경기도의 출연·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



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8-07 조례 제 4774호

1. 제정이유

- 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근접한 도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低減)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 나.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재난대응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 나. 도지사에게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지휘관이 민간자원 제공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다. 재난대응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물적·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6조)



시 사 점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 민간(인적·물적)자원의 자발적 대응을 독려, 재난 대응활동 중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 검토 필요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8-07 조례 제 4774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경기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



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도지사는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 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개정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07.29.] [대통령령 제25509호, 제정]

1.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의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2354호, 2014.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제3조부터 제5조까지)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2)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3)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5년마다 평가하여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5년마다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나.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나,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문화환경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및 문화도시의 지정 등(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1) 문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제21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사업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마.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시 사 점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조례」 중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업범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개정 검토 필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세 ⑧]

충청남도의회 60년사

제4편

충청남도의회 의 성과와 미래

(제3장 문화 · 복지 분야)



충청남도의회의 성과와 미래상

목 차

제3장 문화·복지 분야	36
제1절 주요의정활동	36
1. 1~3대	36
2. 4대	36
3. 5대	40
4. 6대	45
5. 7대	51
6. 8대	56
7. 9대(전반기)	65
제2절 성과와 평가	68

제4편 충청남도의회 의 성과와 미래상

제3장 문화·복지 분야

제1절 주요 의정활동

1. 제1대~제3대

1952년 5월 20일 시작된 제1대에서 제3대까지의 충청남도의회는 총 53회의 회의기록이 있다. 그러나 제1회~제53회 회기 내 본회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시기에는 문화나 복지와 관련된 활동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이 시기는 전쟁이 진행 중이거나 전쟁 후 복구 시기로 전후에 벌어진 많은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느라 문화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54년 7월 14일(수) 오전 10시 15분에 개최된 제14회 3차 본회의에서 “대전문화원의 기구기재(器具機才) 일부 철수에 대하여 종전대로 조치를 요하는 건의문 발송결의”를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정확히 꼬집어 말한다면 이 부분도 문화 분야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의원들이 역할을 수행했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었다.

2. 제4대

제4대부터 충청남도는 문화 및 복지와 관련된 활동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4대에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위’를 구성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제66회 임시회부터 제78회 임시회까지 활동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기능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대정부 섭외활동’과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관련 세부 활동 중 문화분야의 조례로는 제5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러한 조례안 처리 등만을 보아도 제4대에 이르러서 점차적으로 백제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집중되면서 회의와 의결 사항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분야 조례안은 모자복지기금, 여성회관 설치,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례안이 주목된다. 이중 제58회 임시회에서의 충청남도여성회관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사회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이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는 활동상황은 1990년대가 문화와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시대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중 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교육사회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문화와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한 활동을 함께 전개하였고, 이중 교육 분야에 대해 무게가 더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 가운데 문화와 복지 분야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내무 위원회	제57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58회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72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87회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조례안	1				
문교사회 위원회	제56회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1			
	제61회	충청남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외1건	1	1			
교육사회 위원회	제63회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3				
	제64회	충청남도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	2				
	제70회	충청남도노임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			
	제76회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제80회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84회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		2			
	제88회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	1	1			
	제89회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제92회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	2				
지역경제 위원회	제88회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	1				
본회의	제82회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내무 위원회 · 교육사회 위원회	제57회	1991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제60회	1992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외 3건
	제62회	1992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제68회	1992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제69회	199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외 8건
	제74회	1993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7회	1993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8회	1992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외 2건
제80회	199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외 9건
제85회	1994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제87회	199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외 4건
제89회	199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외 4건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내무 위원회	제66회	건의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86회	결의	1	계백무공훈장 상훈지정 건의안
내무 위원회	제61회	보고	1	1992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제65회		1	1992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회)
	제70회		1	19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내무국)
	제76회		1	19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내무국)
	제81회		1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내무국)
	제86회		1	19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내무국)
	제90회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무국)
교육사회 위원회	제56회	보고	1	1992년도 현황보고(가정복지국)
	제61회		1	1992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정복지국)
	제63회		1	1992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가정복지국)
	제70회		1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정복지국)
	제76회		1	19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정복지국)
	제81회		1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정복지국)
	제86회		1	19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가정복지국)
	제90회		1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정복지국)
교육사회 위원회	제82회	현장방문	5	충남과학교등학교, 부여청소년수련원, 충남임해수련원, 병원선, 원산도 보건진료소
내무 위원회 · 교육사회 위원회	제80회	행정 사무 감사	6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지방공사서산의료원, 지방공사홍성의료원)
	제89회		5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가정복지국, 지방공사천안의료원)

3. 제5대

제5대 충청도의회 의 문화 분야 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안은 제9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가 논의·처리되었다. 특히 제5대 임기 중에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백제문화권개발, 문화재시설관리 등을 주목하였다. 1990년대 충청남도 문화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 꼽을 수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1978년 시작되었고, 1994년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제5대 충청도의회에서는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단계였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항들이 수차례 협의·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결의안 심의, 승인, 보고,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이 있었다. 결의안 심의 중 제104회 임시회에서 2002월드컵경기천안유치결의안이 처리되어 문화체육부장관, 월드컵유치위원회위원장, 국제축구협회회장 등에게 전달되었다. 승인안은 제11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19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문화체육국, 계룡출장소) 등을 심의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9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을 심사하였다.

보고받은 활동은 제1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과 백제문화권사업소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이 있다. 임기 중 문화유적지 등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이 이어졌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08회 정기회에서 내무위원회는 문화체육국 소관업무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분야를 소관하는 분과는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였다. 그러나 모두 문화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과 문화복지 분야에 두루 관여했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의 조례안 처리는 제101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의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예산안 처리는 제99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가정복지국·보건환경국의 199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8건을 처리하였다.

기타 활동 중 승인안으로는 제107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1995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보건환경국 소관)을 처리하였으며, 제116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1996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생활복지국) 등을 처리했다.

보고받은 활동으로는 제94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복지분야 업무를 주도하려는 가정복지국의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공주에 있는 남부지역장애인종합복지관을 현장 방문하였고, 제108회 정기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생활복지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제5대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복지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곳은 교육사회위원회였다.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육과 문화복지 분야를 관여하므로 복지 분야에 대한 두드러진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전시기에 비해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대되고 이와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타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 기록 및 현황 보고사항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도의회의 의정 업무가 문화와 복지의 구체적인 면에서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청남도의 업무 상황들이 보이기도 한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여성의 복지에 여력을 기울였던 해였음이 도의회의 활동상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내무 위원회	제97회	충청남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				
	제105회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109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제112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중 개정조례안	1				
	제117회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교육사회 위원회	제99회	충청남도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안		1			
	제101회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	1	1			
	제104회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	2				
	제106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	1	1			
	제108회	충청남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제111회	충청남도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1			
	제112회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113회	충청남도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1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내무 위원회	제116회	199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문화체육국)
	제117회	19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교육사회 위원회	제96회	1995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7회	1994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제98회	1995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9회	1995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03회	1996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07회	1995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108회	1996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2회	199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6회	199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117회	1997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0회	19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교육사회 위원회	제101회	건의·결의	1	경노승차권제도 변경관련 결의문 채택

내무위원회	제109회	보고	1	일반현황보고(문화체육국)
	제110회		2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국 외 1건)
	제111회		1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국)
	제114회		1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문화체육국)
	제115회		1	문화예술진승 등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개정 추진상황 보고
교육사회위원회	제94회		3	업무보고(보사환경국 외 2건)
	제100회		3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보사환경국 외 2건)
	제101호		3	주요당면현안사항보고(생활복지국 외 2건)
	제105회		3	19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생활복지국 외 2건)
	제109회		4	일반현황보고(생활복지국 외 3건)
	제110회	4	1997년도 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 외 3건)	
	제111회	2	199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생활복지국 외 1건)	
	제114회	4	19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생활복지국 외 3건)	
내무위원회	제116회	1	생활복지국 당면업무보고	
	제118회	4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 외 3건)	
	제103회	현장방문	1	문화유적지
	제105회		5	천안 오룡경기장, 현충사, 아산외암마을, 청양장곡사, 공주 전국체전
	제106회		3	금산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칠백의총, 관촉사 돈암서원
	제107회		1	부여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현장
	제110회		3	공주, 부여, 홍성 문화유적지
제118회	4		갑사, 신원사, 대조사, 성주사지	
교육사회위원회	제103회	1	금산·금성 참물음료	
	제105회	3	논산성모의 마을, 대천 병원선, 예산 덕산신생원	



제106회		2	현장방문(서천 에베네셀모자원, 공주 하수종말처리장)
제112회		4	현장방문(아산 성애원, 일신원)
제115회		1	현장방문(남부지역장애인종합복지관)
제116회		1	청양애경유지
제118회		5	현장방문(연기 영명보육원,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공주 명주원, 동곡요양원)
제119회		5	현장방문(아산요양원, 정예마을 흥성사랑육아원, 공주쓰레기매립장, 보령위생쓰레기매립장)
제108회	행정사무 감사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국, 충청남도체육회)
제117회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국)
제99회		4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제108회		5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행활복지국, 여성회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심의관실)
제117회		5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생활복지국, 여성정책심의고나실, 여성회관,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4. 제6대

제6대 충청남도의회의 문화분야 수행성과는 백제문화권개발과 문화재보호, 문화예술진흥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임기 중인 1998년~2002년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개막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문화분야의 업무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던 배경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게임사업의 급성장을 반영하듯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였던 것이 특징적이다.

관련 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충청남도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등을 시작으로 여러 위원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심의, 처리되었다. 예산안은 제122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국 소관)을 심의하는 등 주로 문화체육국의 예산문제를 심사·승인하였다.

보고 활동으로는 제122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19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체육국 소관)를 받는 등 자치문화국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등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 현장 활동으로는 제127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금산 보석사) 등 도내 문화재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분야 사업을 주관하는 자치문화국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제6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문화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소관하는 위원회가 없었고,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주로 관여하였다. 제5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가 제6대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되어 예산·결산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문화분야가 다루어졌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회명칭에서도 드러나듯 교육 분야와 함께 복지분야 업무를 심사하였다. 문화분야 의정활동에서 두드러진 점은 실제적인 문제와 실태파악을 위해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문화시대에는 행정이 책상에서만이 아닌 현장에서의 행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분야 조례안은 제125회 정기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등 주로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처리하였다. 예산안의 경우 제124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가 1997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보건복지여성환경국 소관) 등을 심사하는 등 임기 내 복지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8년



8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제6대 충청남도의회에 와서 심의 완료되어 1999년 2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법인설립이 허가되었다.

보고활동은 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활동상으로 나타난다. 제122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19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생활복지국 소관)를 받는 등 주로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현장방문 활동으로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3회에 걸친 현장방문 등 7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다. 복지시설과 여성정책개발원, 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등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33회 정기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는 1999년도 보건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였다.

제6대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특히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및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분야가 여성의 복지에서 노인 및 아동 등의 복지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의원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행정자치 위원회	129회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		2			
	130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1			
	133회	충청남도주식회사삼교호함상공원출자에관한조례안	1				
	143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외 3건	4				
	144회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		2			
	146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1				

	148회	충청남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외 2건	2	1			
	150회	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	1				
	159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건설소방 위원회	제128회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				
본회의	제128회	충청남도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				
	제130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143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146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159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	1				
	제160회	충청남도개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	1				
교육사회 위원회	제121회	충청남도과학전시회 조례폐지조례안	1				
	제122회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1	1			
	제125회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2				
	제126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				
	제127회	충청남도도립공원집단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 지조례안	1				
	제133회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안 외 1건	2				
	제136회	충청남도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2건	3				
	제137회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143회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 안 외 3건	3	1			
	제145회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	3				
	제146회	충청남도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148회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	4				
	제149회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1				
	제153회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	3	1			
제154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	3					



제155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	3	1				
제159회	충청남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행정자치 위원회	제155회	2001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자치문화국)
	제156회	2001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자치문화국) 외 1건
	제160회	2002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자치문화국)
교육사회위원회	제122회	1998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제124회	1997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외 2건
	제125회	1999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1998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복지여성환경국)
	제155회	2001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자치문화국소관)
	제156회	2001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복지환경국소관) 외 4건
	제160회	2002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성정책관실) 외 2건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행정자치 위원회	제123회	보고	1	당면현안사항보고(자치문화관광국)
	제126회		2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관광국) 외 1건
	제128회		1	당면사항보고(자치문화관광국)
	제131회		1	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문화국)
	제135회		1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
	제138회		1	2001년도 전국체전준비사항보고
	제143회		1	제81회전국체육대회결과 및 제82회전국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
	제146회		3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 외 2건)
	제149회		1	청소년시책업무보고(자치문화국)
	제152회		1	자연사박물관건립추진현황보고
제158회	1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자치문화국)		
교육사회	제122회		6	19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체육국) 외 5건

위원회	제122회		1	1998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생활복지국)
	제123회		2	당면현안사항보고(보건복지여성환경국) 외 1건
	제126회		1	1999년도 업무계획보고(보건복지여성환경국)
	제127회		1	당면사항보고(보건복지여성환경국)
	제135회		1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제146회		1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제153회		1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제158회		1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여성정책관실)
행정자치위원회	제124회	현장방문	4	홍성의료원(건립예정지),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홍성), 4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공주), 마곡사 성보박물관(공주)
	제125회		5	예산수덕사, 남연군묘, 서산마애삼존불상, 아산현충사, 외암리민속마을
	제127회		3	금산보석사 문화재관리실태, 무량사문화재관리실태, 정림사지문화재관리실태
	제128회		2	웅비담건립현장, 국립공주박물관신축이전부지
	제131회		1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장
	제133회		2	당진합상공원조성지역, 공주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
	제141회		1	자연사박물관건립현장(공주.반포)
	제143회		2	2001년도전국체전관련시설(천안), 삼교호합상공원조성지(당진 신평면)
	제144회		1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제146회		1	2001년도 전국체전대비동계훈련장방문
	제147회		4	‘2001한국방문의해’관련 관광지개발현장시찰, 마량리해돋이마을, 춘장대해수욕장(서천군 서면), 무창포해수욕장석대도(보령시)
	제149회		4	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천안, 아산), 문화재보존관리실태파악(서산, 예산)
	제152회		1	자연사박물관건립(공주 반포)
	제154회		1	제82회전국체전준비상황점검(천안)
	제159회		3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와합상공원조성현장확인(아산, 당진), 왜목마을 관광지개발 현장확인(당진)
교육사회위원회	제122회		1	연기군 양지마을
	제123회		4	가나안노인학교(노인복지시설), 논산 성지원(정신요양원), 서천매복지원(노인복지시설), 향림원(아동복지시설)
	제124회		3	공주여성직업보도원, 연기위생매립장, 천안위생매립장
	제126회		1	보령정심원
	제127회		2	청양구봉광산지역시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제128회		2	가축위생연구부이전신축부지(홍성), 홍성유일원(정신요양시설)
	제132회		3	사랑애육원(홍성광천), 임해수련원, 홍성의료원
	제135회		1	여성정책개발원
	제138회		5	해운대소각장, 장애인종합복지관(경남), 치매요양원(마산), 하수처리장(진주), 광양매립장
	제142회		1	안면도골프장예정지(환경문제관련)
	제143회		1	행담도개발관련갯벌환경문제(당진)
	제144회		3	기독교성심원, 일신원(아산), 금강미호천(공주 반포, 연기 남면, 동면)
	제146회		2	태안군 원복면(사구), 철새도래지(서천)
제149회	1	금강수질검사(공주~서천)		



	제153회		3	성지원(논산), 향림원(금산), 노인전문요양원(부여)
	제155회		1	연기군 하수종말처리장
	제156회		3	화장장(홍성), 위생쓰레기매립장(보령), 행담도오폐수방수관련(당진)
	제159회		2	당진군분뇨처리장, 예산공설묘지
행정자치위원회	제133회	행정사무감사	4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홍성의료원, 서천, 충무과, 충청남도 체육회자치문화국)
	제144회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충청남도체육회소관, 공주의료원, 자치문화국(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제156회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체전기획단, 충남체육회,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자치문화국)
교육사회위원회	제133회	행정사무감사	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담당관실)
	제144회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소관,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제156회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환경국,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5. 제7대

제7대 충청남도의회의 문화·복지 분야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었던 업무를 연속선상에 두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안에 대한 검토와 처리가 이루어졌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문화복지관련 분야를 소관하였다. 전문 분과가 아니었으므로 이 위원회의 활동 속에서 문화와 복지관련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문화분야 수행실적은 기존 주요 업무였던 문화재 보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한편, 충청남도문화상 관련 조례의 개정, 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등의 시작 단계에 관련된 조례안을 처리하였던 것이 주목된다. 임기 중인 2004년에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개원하는 과정도 충청남도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었다.

문화분야의 기타 활동 중에서 문화관련 5분 발언과 업무연찬회 활동이 있었다. 제1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엄금자 의원이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의 반성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다음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동복 의원이 산불예방과 장례문화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귀진 의원이 돌 문화에 깃든 의미와 보존 등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하였다.

관련 업무연찬회가 1회 열렸는데, 이 연찬회는 2003년 3월 경주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으며 14명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 관련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으며, 신라문화권 현장답사 및 견학도 함께 이루어졌다.

복지 분야 역시 이미 운영되고 있던 관련 공공시설과 기관의 운영조례안 외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예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심의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여성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시설 정비 등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다. 교육청 정책 중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기 의원이 도정현안 및 복지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제182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성남 의원이 읍면단위 소규모 장애인작업장 설치에 대한 발언을 하였다.

복지관련 교육사회위원회의 업무연찬회는 한번 열렸다. 이 연찬회는 2005년 1월 18일 서천군 중천면의 현장답사였으며, 이 연찬회는 노인 복지타운조성 토지편입 반대가 주 활동이었다.

제7대에 이르러서는 문민정부시대에 맞이하여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져 도의회의 행정활동이 위축되긴 했으나 활발한 시민활동으로 인해 실제 행정 상황은 매우나빠졌음을 보여준다. 복지분야에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져 도의회가 활발히 움직였음이 드러난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5회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	2				
	제169회	충청남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1				
	제171회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			보류		
	제173회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	1				
	제187회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1				
교육 사회 위원회	제163회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제165회	충청남도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충청남도립홍성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1			
	제167회	충청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에관한 조례안	1				
	제169회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안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1			
	제171회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제172회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제185회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제186회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제187회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189회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190회	충청남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안	2				
	제191회	충청남도공공시설내장애인관람석설치운영조례안	1				
	제194회	충청남도국가보훈대상자에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제195회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4회	2001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65회	2002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66회	2002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70회	2003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71회	2002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72회	2003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75회	200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79회	2004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0회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82회	200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4회	2004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87회	2005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9회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승인의건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92회	2005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교육 사회 위원회	제164회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제165회	2002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66회	2002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70회	2003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71회	200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72회	2003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75회	2003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79회	2004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0회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제182회	2004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4회	2004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187회	2005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89회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제192회	2005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2회	건의· 결의	1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에관한건의안
	제180회		1	KBS공주방송국준치를위한건의안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2회	보고	6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문화국 외 5건)
	제167회		5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국 외 4건)
	제168회		1	충청남도체육회현황보고
	제172회		6	2003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제176회		6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제177회		1	충남역사문화원설립추진상황보고
	제182회		6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제185회		6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제186회		1	당면현안과제보고(문화관광국)
	제189회		3	2006년도 충청남도중기재정계획안보고(문화관광국 외 2건)
	제190회		6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제193회		6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국 외 5건)
교육 사회 위원회	제162회	보고	4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외 3건)
	제167회		4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외 3건)
	제168회		1	진국장애인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
	제172회		5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외 4건)
	제176회		6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외 5건)
	제178회		1	당면현안업무보고(복지환경국소관)
	제182회		5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외 4건)
	제185회		6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외 5건)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3회	현장 방문	5	주요현안사업 및 서해안관광지개발 실태점검
	제168회		4	도정 현장방문(공주시 외 3건)
	제169회		3	도정 현장방문(천안시 외 2건)

	제173회		5	도정 현장방문(공주의료원 외 4건)
	제178회		4	도정 현장방문(백제역사재현단지 외 3건)
	제183회		7	도정 현장방문(천안의료원 외 6건)
	제186회		1	도정 현장방문(청양 정보화마을)
	제188회		7	도정 현장방문(백제군사박물관 외 6건)
	제191회		7	도정 현장방문(공주시 외 6건)
	제195회		1	도정 현장방문(도립수산연구소 설립예정지)
교육 사회 위원회	제163회		3	교육현장 및 정신보건, 환경시설 관리상황 점검(천안 외 2건)
	제173회		5	행정사무감사 대비 교육 및 복지시설실태 점검
	제177회		3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소망공동체 외 2건)
	제178회		2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금매복지원 외 1건)
	제182회		2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정애마을, 장수원 평생학습관)
	제183회		1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제186회		3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장애인의날 행사참석,인애학교,INI스틸)
	제187회		3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장애인의날 행사참석, 서천화력, 에단버러CC)
제188회	5	도정·교육행정 현장방문(기독교성심원 외 4건)		
행정 자치 위원회	제165회		1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금산군, 예산군, 충남발전연구원, 계룡출장소, 공무원교육원, 공주의료원, 총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문화국, 기획정보실)
	제173회		1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령시, 서산의료원, 서산시청,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안면도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충남발전연구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제183회		1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당진군, 서천군, 공주의료원, 공무원교육원, 충청남도장학회,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제191회		1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논산시, 충남발전연구원, 청양군, 천안의료원, 연기군,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교육 사회 위원회	제165회		6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청양대학,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교육청)
	제173회		9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예산교육청, 보령교육청,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교육청)
	제183회		8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홍성교육청,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충청남도교육청)
	제191회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천안교육청,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복지환경국, 충청남도교육청)



6. 제8대

제8대 의회의 문화 분야 활동은 기존에 상시적으로 다루고 있던 문화재의 관리 문제 외에 백제문화제와 축제,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조례 심의가 있었다. 주요 조례안의 소관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기타활동으로는 2007년 10월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건립건의안을 채택하였고, 2008년 10월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 교육특구」 신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제 8대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 총 143건 중 문화 분야와 관련된 사항은 17건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전반에 걸쳐있다. 소관부서는 주로 문화관광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등이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백제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강구 요구, 문화재 발굴기간의 최소화 방안 마련,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문화산업지원방안 등의 정책적인 사안을 비롯해 문화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활성화 방안과 문화재단난 방지대책과 같은 내용들이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임기 중 충청남도에서 처리요구를 한 사안이 총 358건인데, 이중 문화분야는 10건으로 2007년 백제문화제 발전방안 수립 추진 등 6건, 2008년 백제문화제 지속발전 강구 1건, 2009년 지역축제 통합 지속 추진 등 3건 이다. 소관위원회는 주로 행정자치위원회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조성사업 민원해결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총 187건의 건의 중 문화 분야의 건의사항은 2006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과 영상미디어센터 통합 방안 검토, 2007년 태안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우회도로건설추진, 2008년 내포문화권개발사업 검토, 2009년 2010세계대백제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이 있다. 소관 위원회는 모두 행정자치위원회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유형문화유산보다는 무형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분야는 제4대~제7대까지의 복지분야 업무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며 취약층의 대상도 세분화되었다. 즉 이제까지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 왔다면 제8대 충청남도의회 의 업무성과를 분석해보면 노동자, 여성장애인, 학대아동, 조손가정, 장애인가족, 교통약자 등 보호와 지원 대상이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분야의 소관위원회는 주로 교육사회위원회이며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산경제위원회도 업무와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기타 활동으로 2009년 2월 6일에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9월 15일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을 원안 처리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는 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위원선임의 건과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기록되어 있다.

제8대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 총 143건 중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항은 13건이다. 이를 세분해 보면 2006년 여성정책개발원 지도감독 철저 등 3건, 2007년 여성발전복지지원 대상사업 검토 철저 등 4건, 2008년 지방의료원 특단의 경영혁신방안 강구 등 3건, 2009년 지방의료원 특단의 경영혁신방안 강구 등 3건이다. 소관집행부는 대개 여성정책가족관, 복지환경국이며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 관광지의 장애인 시설 편의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처리요구사항 총 358건 중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항은 28건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하였고, 대상 집행부는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개발원, 천안의료원,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등이었다. 2006년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관련 등 5건, 2007년 정신질환자 발생률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강구 등 5건, 2008년 장애아 가족업무 통폐합방안 강구 등 10건, 2009년 전국장애인체전 성적향상 대책마련 등 8건이다.

충청남도의회 건의사항 총 187건 중 복지분야와 관련된 사항은 15건이다. 2006년 보육정책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등 4건, 2007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행복가꾸기사업개선 대책강구 등 5건, 2008년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대책강구 2건, 2009년 장애인체육회 시군지부 구성 등 4건이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실제적인 도의회의 활동이 업무의 보고나 개선 등의 단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의와 처리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행정자치위원회	제198회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1				
	제202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			
	제205회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				
	제207회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외 1건	1	1			
	제208회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210회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4				
	제214회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			2(보류)		
	제21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1			
	제216회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	1				

	제220회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외 3건	2	1	1(보류)		
	제221회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외 2건	2	1 (대안가결)			
	제223회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				
	제224회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25회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226회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			
	제229회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3				
	제230회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제231회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	2				
	제234회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교육사회 위원회	제198회	충청남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00회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01회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1				
	제210회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외 4건	5				
	제212회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1건		2			
	제213회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16회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1				
	제219회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220회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221회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제222회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안(계속) 외 3건	2	1	1(보류)		
	제223회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2건	3				
	제224회	충청남도 헌혈권장 조례안	1				
	제225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보류)		
	제226회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외1건	1	1			
	제227회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	1			
	제228회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외2건	2	1			
	제229회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제230회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2	1			
	제233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34회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행정자치 위원회	제199회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 승인의건(문화체육관광국) 외 1건
	제201회	2006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외 2건
	제205회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국)
	제207회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문화관광국) 외 2건
	제210회	2007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감사관) 외 3건
	제216회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문화체육관광국) 외 4건
	제221회	2008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외 3건
	제223회	2009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제226회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문화체육관광국) 외 1건
	제229회	2009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외 2건
교육사회 위원회	제199회	2006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외 7건
	제201회	2006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복지환경국) 외 7건
	제205회	200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외 2건
	제207회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복지환경국) 외 4건
	제210회	2007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
	제216회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7건
	제221회	2008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6건
	제223회	2009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26회	2008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외 6건
	제227회	2009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제229회	2009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행정자치 위원회	제198회	보고	3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제202회		1	2007년도 충청남도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국)

	제203회		2	충남역사문화원 업무계획보고 외 1건
	제208회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문화체육관광국)
	제212회		4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국 외 3건)
	제219회		6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남발전연구원 외 5건)
	제222회		2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 외 1건)
	제227회		6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남개발공사 외 5건)
	제230회		2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공보관 외 2건)
교육사회 위원회	제198회		1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
	제202회		2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외 1건)
	제205회		1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여성정책개발원)
	제208회		2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복지환경국 외 1건)
	제212회		3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외 2건)
	제214회		1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경영개선방향 보고의 건(복지환경국)
	제219회		2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외 1건
	제222회		3	석면광산 피해 종합보고(복지환경국 외 2건)
	제225회		1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등 현안보고
	제226회		1	복지환경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제227회		2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복지환경국 외 1건)
	제228회		1	복지환경국의 신설부서인 식의약안전과 업무보고
	제230회		2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복지환경국 소관 외 1건)
행정자치 위원회	제208회	건의 · 결의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제209회		1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건립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교육사회 위원회	제201회		1	충청남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자치 위원회	제200회	현장 방문	8	충남역사문화원 등 8개사업장(충남역사문화원, 청양대학 다목적관, 령머드 체험관, 도서개발사업(보령, 태안), 굴포운하 유적지 및 해미읍성 복원사업장, 삼교호합상공원
	제203회		1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제204회		4	충의사, 고암 이응노선생 사적지, 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
	제208회		4	도 무형문화재 전통창호제작 전수관 건립현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부지 매입지,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연구동 신축지 및 시험포 조성 매입지(2일)
	제209회		8	홍성소방서 부지 취득 예정지, 정보화마을(홍성문당 환경농업마을, 서산 회



			포마을), 소도읍육성사업현장(홍성읍),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 현장, 소도읍 육성사업현장(태안읍), 태안마애삼존불, 태안 해저유물 발굴현장(2일)	
제213회		2	천안시, 예산군(2개 시·군 2개소) -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예정지(천안시 삼룡동) -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매입 및 청사신축 예정지(예산군 예산읍)	
제214회		3	대전광역시 대서동, 청양군(2개 지역 3개소/ 2일간) - 도유재산(충무시설) 매각 예정지(대전광역시 대서동) - 정산향교(청양군 정산면) - 청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청양군 청양읍)	
제215회		3	전남 함평, 전남 순천(2개 지역 4개소/ 2일간) -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자연생태공원(전남 함평) - 낙안읍성, 송광사(전남 순천)	
제216회		2	부여군, 보령시(2개 시·군 2개 지역) - 백제역사재현단지 토지 교환 취득 예정지 및 백제역사재현단지 민자사업 지구 매각 예정지(부여군 규암면)-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예정지(보령시 주교면 관창산업단지 내)	
제224회		3	보령시, 태안군(2개 시·군, 4개 사업현장/ 1박2일) -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 예정지(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 도서종합개발 사업현장(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태안군 안면읍)	
제225회		3	부여군(3개 사업장) -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부여군 규암면) - 백제역사재현단지 롯데콘도미니엄 신축공사현장(부여 규암면) - 부여 능산리 고분군 및 능사지 정비사업 현장(부여군 부여읍)	
제226회		3	강원도 평창군(1개 지역 3개소/ 1박 2일) 이효석 문학관, 오대산 월정사, 강원도개발공사(알렌시아 사업본부)	
제228회		6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인천광역시), 경인아라뱃길 [경인운하] 건설현장(인천광역시), 소도읍개발사업현장(충남 청양군), 신성리 갈대밭·한산모시관(충남 서천군), 내소사·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전시관(전북 부안군) 부안댐관리소(전북 부안군)	
교육사회위원회	제209회	선진 사례 견학	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 견학
	제234회		4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 선진지 방문견학, 보성녹차밭,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남원관광단지
	제203회	공무국 외출장	1	미국, 캐나다 (2개국 8개지역/ 11일)
	제228회		1	일본(5개 도시 : 삿포르, 노보리베츠, 동경, 오사카, 교토 / 5일)
	제200회	현장 방문	5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물 시찰(병원선, 서림복지원예산노인종합복지관, 홍성(서산)의료원, 홍성축산폐수처리장)
	제203회		3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물 시찰(새만금종합개발사업지,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 명도복지관)

	제204회		1	업무보고 청취 및 운영프로그램 관람(서산 노인요양원)
	제208회		1	업무보고 청취 및 운영프로그램 관람(평안의집,)
	제209회		5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물 시찰 (거창군청,서천장항제련소,홍성의료원,서산의료원,서부평생학습관)
	제212회		1	폐기물 처리실태 점검(서광하이테크,)
	제213회		1	복지시설 실태 점검(신아원)
	제215회		3	복지시설 이용실태 점검(사회복지시설 꽃동네, 계룡시 노인종합복지관,계룡 상록어린이 집)
	제216회		1	제25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참석(당진 문예의 전당)
	제220회		2	복지시설 실태 점검(계룡학사, 계룡정심원,)
	비회기 중		1	석면광산 피해지역 실태파악(보령시 대보석면)
	제224회		1	복지시설 실태 점검(예산노인요양원,)
	제225회		1	환경시설 실태 점검(서천 위생매립장)
	제227회		1	제10회 충청남도 사회복지의날 행사 참석(연기문화예술회관)
	제228회		5	복지시설 운영상황 및 실태점검(사랑의 마을, 요나의 집,노아의 집, 방주의 집, 금이성 마을)
	제200회	공 무 국	1	그리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06. 10. 29 ~ 11. 8(11일))
	제226회	외출장	1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09. 7. 29 ~ 8.6(9일))
행정자치 위원회	제201회	행정 사무 감사	1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룡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장학회, 기획관리실, 감사관, 공보관)
	제209회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천안시, 부여군, 공주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개발공사,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기획관리실(충남장학회 포함), 공보관,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제220회		1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개발공사,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청소년육성센터, 충남장학회, 기획관리실(충남장학회 포함), 감사관, 기획관리실)
	제228회		1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금산군, 예산군, 홍성군, 충남개발공사,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청남도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충남청소년육성센터, 공무원교육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기획관리실, 감사관, 자치행정국, 공보관)
교육사회 위원회	제200회	행정 사무 감사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제209회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서부장애편복지관)
제220회	7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남부평생학습관)
제229회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개발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7. 제9대(전반기)

제9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활동을 정리하면, 제9대에서는 드디어 문화·복지 분야가 상임위원회에 독립적으로 등장하였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회기 중 2010년 4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을 원안 가결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것이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도민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문화와 복지 정책을 위한 것이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넓히며 복지와 건강증진 문제에 관여한다. 문화강국이 곧 강한 경제력으로 이어지고 국가 복지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다.

소관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보건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문화복지·체육·관광 분야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지원과 견제의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공공보건 서비스,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접근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특히 가족정책, 보육정책,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조례안은 제4대~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 문화분야 업무와 비교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한 사안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분야는 세계유산등재, 백제문화단지 관리, 문화상, 문화예술진흥 등과 관련된 조례안이 마련되었다. 복지분야에서 도민인권조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제정 등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 충청남도에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9대 전반기 의회의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의견 조율 미흡으로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등 안건 처리가 지연된 것은 아쉬웠던 점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주관 처리함에 따라 기존에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등으로 분리되었던 문화복지 분야 예산을 일괄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기존의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분야로 분리된 것은 문화복지 분야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 조례안

소관 위원회	회기	조례안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폐기	자동 폐기
문화복지 위원회	제237회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제238회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				
	제239회	충청남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3				
	제240회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241회	충청남도 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1건	2				
	제242회	충청남도 주식회사 삼고호 합상공원 출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	2				
	제243회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	1	1		



제244회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245회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				
제246회	충청남도 임산부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3			
제247회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				
제248회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2				
제250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1	1			
제251회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	3	2			
제253회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3	3			

■ 예산 및 결산

소관 위원회	회기	예산·결산
문화복지 위원회	제237회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복지환경국) 외 13건
	제239회	2010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외 8건
	제243회	2011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여성가족정책관) 외 3건
	제244회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문화체육관광국) 외 8건
	제247회	2011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체육관광국) 외 11건
	제251회	2012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문화복지위원회)
	제253회	2011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환경녹지국(산림환경연구소 포함)] 외 10건

■ 기타활동

소관 위원회	회기	구분	총건수	안건명
문화복지 위원회	제250회	동의 · 승인	1	공주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
	제236회	보고	16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국,외 15건)
	제240회		8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문화체육관광국 외 7건)

제242회		2	환경녹지국 당면사항 보고 외 1건	
제244회		1	(재)충청남도청소년육성센터 업무보고	
제245회		10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여성가족정책관 외 9건)	
제248회		6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녹지국 외 5건)	
제250회		1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	
제251회		1	천안의료원 업무보고	
제236회	현장 방문	1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제237회		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238회		4	광주 비엔날레, 천안장애인복지관, 생활체육협의회, 공무국의 시찰(호주, 뉴질랜드, 2010년 10월 27일~11월 4일)	
제241회		3	산림환경연구소, 공주 마곡사 솔바람길, 휴양림관리사무소	
제242회		2	가고싶은 섬 개발현장, 충남 병원선 방문	
제245회		1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제246회		1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	
제249회		5	외암민속마을, 광덕 환경교육센터, 충남생활체육회, 둔암서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제251회		1	보석사	
제252회		1	2012 세계여수박람회 현장방문(2012년 6월 12일~13일)	
제239회		행정 사무 감사	1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 외 14건)
제247회		감사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정책관보건환경연구원 외 11건)

제2절 성과와 평가

제1대에서 제3대까지의 충청남도의회는 문화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대전문화원의 기구기재(器具機才) 일부철수에 대하여 종전대로 조치를 요하는 건의문 발송결의”를 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고는 문화·복지분야의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활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대 충청남도의회는 문화분야나 복지분야에서 나타난 조례안건 수나 기타 활동으로 볼 때, 제1대~제3대보다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문화·복지분야의 도의회의 활동은 미미했다.

제4대 시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래도 아직 문화와 복지분야의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나라의 전반



적인 국가역량이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의회가 30년만에 부활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시기였다.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여 1991년 7월 8일에 역사적으로 다시 시작한 제4대 충청남도의회가 문화·복지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에는 국가 전반적인 분위기나 사회분위기가 다소 미흡했고, 도의회의 활동 또한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는 문화와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시대였음을 의원들의 기록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제5대 문화분야 활동은 제4대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으며, 복지분야 활동도 대다수의 항목에서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제5대의 문화·복지분야에 대한 활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관련 조례의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 등 문화복지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4대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 기록 및 현황 보고사항을 통해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도의회의 의정업무가 문화와 복지의 구체적인 면에서 펼쳐졌음을 알 수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업무 상황들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여성의 복지에 여력을 기울였던 해였음이 기록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제6대 문화·복지분야의 활동은 양적으로 볼 때 제4대나 제5대보다 많이 늘어났으며, 질적으로 볼 때도 문화분야는 다양한 문화복원사업 등 충청남도 문화의 뿌리인 백제문화의 복원에 많은 공을 들였음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분야도 양적으로 처리안건도 많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복지분야와 더불어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분야에도 관심을 높이는 차원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6대에서는 특히 복지분야에서 다양한 활동 및 보고 처리안들이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복지분야가 여성의 복지에서 노인 및 아동 등 복지로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도의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제7대 문화·복지분야의 활동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회 의 자료가 제5대나 제6대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 평가를 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로만 볼 때 제7대의 활동은 제6대에 비하여 다소 위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7대에 이르러서는 문민정부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소리가 높아져 행사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제8대 문화분야의 활동은 안전처리나 기타 활동으로 볼 때 제8대가 제7대보다 다소 활동이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분야에 어느 정도 정량적·정성적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분야의 활동은 감사활동을 통한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다만, 제8대는 문화분야보다 복지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8대에서는 실제적인 도의회의 활동이 업무보고나 개선요구 등의 안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건의와 처리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분야에서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져 충청남도의회가 활발히 움직였음이 드러났다.

제9대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이 때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분야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지분야를 처리해왔던 것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소관함에 따라 훨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었다. 문화와 복지가 별개가 아닌 서로 연관되는 분야로 이해하게 된 것도 큰 성과이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4년 9월 11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 ❖ 인 쇄 처 : 동방상사 TEL.041-338-9520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